

각종 자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5. 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38조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학교체육위원회
2. 생활체육위원회
3. 경기력향상위원회
4. 운영위원회
5. 여성체육위원회
6. 그 밖에 체육회 규약 제38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설치되는 위원회

② 제1항 외의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규약 및 해당 위원회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11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 4 조(위원의 위촉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해당분야와 관련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체육회 규약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③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여성체육위원회는 인권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제3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규약 제38조제2항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그 설치목적 및 성격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 5 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6 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 일은 정기총회 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 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 8 조(회의의 소집 등)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9 조(의사정족수 및 위원회 심의사항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로써, 경미한 사항은 회장의 결재로써 확정된다. 다만,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규정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의무사항)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체육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경비의 지급) 체육회 규약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각종 위원회의 기능

제13조(학교체육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 진흥조사연구, 체육연구 논문발표 및 강습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5. 학교체육공로자 표창 추천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시·군 학교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체육장학생 선정에 관한사항
10. 그 밖에 학교체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생활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직장체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장, 체육관(사설도장 포함)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 행사에 관한사항
5. 시·군 생활체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생활체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경기력향상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적인 경기력향상과 기본계획
2. 스포츠과학 연구발전 및 훈련 개발에 관한 사항
3. 경기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우수선수 소질 보유자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5. 전국체육대회(동계·하계) 제반 사항
6. 선수 강화훈련의 실시, 지도, 감독, 경기력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7.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문화진흥에 관한사항
9. 그 밖에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사항
 2.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각종 기금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체육회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기금과 관련된 운영규정은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며, 운영위원회가 기금관리위원회 기능을 한다.

제17조(여성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여성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3. 여성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4. 여성체육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체육관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여성체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보 칙

제18조(규정의 해석 등) 본 자문위원회 규정은 개별 위원회 규정에 우선 적용하며, 개별위원회 규정은 이를 보충한다.

제19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0. 5. 6.)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